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 정관

제정일 : 2008. 12. 26.

개정일 : 2022. 2. 18.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은 군 방첩요원 출신자들의 오랜 경험과 안보 역군으로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하고, 국방·안보·통일·외교 분야정책 제도의 연구·조사·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이하 “본 연합”라 하고 약칭으로는 “충호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 ① 본 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연합은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구역에 지부를 두고 기초자치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 ① 본 연합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 ① 본 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 및 장병 국가관·안보관 정립과 관련 조사·연구·분석
 2. 안보·통일·외교 분야정책 대안 개발

3. 안보 강연회, 교육 강좌 개최 등 국민 계도사업
 4. 국방·안보 관련 학술대회 개최, 협회지 및 기타 문헌의 발간/배포
 5. 産·學·研·官·軍 등 관련 기관의 연구 사업
 6. 기타 본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본 연합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본 연합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21. 1. 18.>

- 제 2 장 회 원 -

제6조(구분 및 자격)

- ① 본 연합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군 방첩요원 경력자 중 명예롭게 전역한 장병 및 군무원 출신으로 가입비 납부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한 후,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5.>
- ③ 준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군 방첩출신으로 본 연합 가입비 납부 등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가입하였으나, 연회비를 미납하는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5.>
- ④ 명예회원은 본 연합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기여도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자를 말한다.

제7조(가입) 본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연합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11조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세부절차 및 납부 금액 등은 본 연합 내규로 정한다.

제8조(탈퇴)

- ① 회원은 본 연합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성년피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개정 2019. 4. 5.〉
4. 〈삭제 2019. 2. 1.〉
5.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 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본 연합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연합에서 발행되는 간행물과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의무)

- ① 회원은 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명예회원 포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자유의사로 본 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정치활동의 금지) 본 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 연합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제 3 장 조 직 -

제13조(본부조직)

- ① 본 연합의 의결기관의 업무 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 본부는 본 연합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사회단체·국민 등에 대한 대외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 ③ 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 ⑤ 본부의 각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직원)

- ① 직원은 본 연합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산하조직)

- ① 본 연합의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지부와 출신별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의 내규로 정한다.

- 제 4 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구성)

- ①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2인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제16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정회원인 후보자 중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제1호와 같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출신별 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① 성년피후견인 또는 한정피후견인 <개정 2019. 4. 5.>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본 연합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운영

2. 본 연합의 직원의 임면·관리·감독

3. 제5조에서 규정한 본 연합의 사업의 지휘·감독 등 제반사무 등

②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21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의결기관 -

제22조(의결기관의 구분) 본 연합의 의결기관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3조(회의 의결방법)

①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4분의 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의원총회 출석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5.>

② 의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안표결 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회의의 소집) 이사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자 15일 전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 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4조에 의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 절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정회원만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월에 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 및 대의원의 과반수가 요구 시 소집한다. <개정 2019. 4. 5.>

② 위 제1항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본 연합의 해산
4. 본 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 연합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위 제1항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지부 또는 직능별로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고, 총 대의원수 중 선출직 대의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5.>

② 대의원의 총수는 10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5.>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회의의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의는 대의원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9. 4. 5.>

④ 대의원회에 부득이 참석 불가 시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제31조(의사록)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대의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

(제 3 절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4. 5.>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안발의)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발의한다. 다만 의장이 아닌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방법은 제23조에 따르며, 이사회에 부득이 참석 불가 시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개정 2019. 4. 5.〉

제3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 ② 정관 변경안의 심의
- ③ 사업계획의 심의
- ④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 ⑤ 상벌에 관한 사항
-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 ⑦ 명예회원의 지정·심의
- ⑧ 부설기관 및 지부, 지회 설치 및 통·폐합 관련 사항
- ⑨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 연합 업무집행에 중요사항

제36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5.〉

제38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

제38조-1(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신설 2015. 1. 14.〉

- ①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본 연합의 사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부 사무총장과 각 국장 및 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

- ③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운영·감독한다.
-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 6 장 자문위원회 -

제39조(자문위원회) 〈개정 2015. 1. 14.〉

-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그 직무에 대해 자문할 명예이사장 등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명예이사장 또는 자문위원은 다음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본 연합의 임원을 역임한 인사
 2. 본 연합의 정회원으로 덕망 있는 저명인사
 3. 본 연합의 명예회원으로 본 연합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
-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0조(자문위원회의 직무) 명예이사장 및 자문위원은 본 연합 운영과 활동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 14.〉, 〈개정 2019. 2. 1.〉, 〈개정 2019. 4. 5.〉

-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41조(재산의 구분)

- ① 본 연합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 ② 매년도 말일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제42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 <삭제 2009. 1.23.> ※제55조(해산)내용일부와 중복됨으로 삭제

제44조(경비와 유지방법) 본 연합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 ② 회원의 기부금
- ③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대여금
- ④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금
- ⑤ 기타 본 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 ⑥ 본 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09. 1. 23.>

제45조(회계의 구분)

- ① 본 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본 연합의 회계 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6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본 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 재산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정기대

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장 상 별 -

제50조(표창) 본 연합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본 연합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상벌의 절차) 본 연합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제 9 장 정관의 변경 -

제53조(정관변경 발의)

- ① 정관변경은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5.>
- ②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54조 (정관의 변경)

- ①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대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5.>
- 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장 보 칙 -

제55조(해산)

①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때 <개정 2019. 4. 5.>
3.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 연합이 파산되었을 때 <개정 2019. 4. 5.>

② 본 연합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56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 연합 내규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7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임원 선임)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연합의 설립연도의 회계연도는 본 연합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차 개정] 이 정관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삭제, 제44조 ⑥항 신설)

[제2차 개정] 이 정관은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의 1 ①②③④항 신설, 제6장 제39조 및 제40조 개정)

[제3차 개정] 이 정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 ②항 4 삭제)
(제28조 ① · 제30조 ④항 · 제31조 · 제34조 · 제38조 · 제38조 1 ②항 · 제40조 ①항 개정)

[제4차 개정] 이 정관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②③항 · 제8 ②항 3 · 제18조 ①항 · 제23조 ①항 · 제26조 ①항 2 · 제29조 ①②항 · 제30조 ③항 · 제33조 ①항 · 제34조 · 제37조 · 제40조 · 제41조 ②항 · 제53조 ①항 · 제54조 ①항 · 제55조 ①항 2, 3 개정)

[제5차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③항 신설)

[제6차 개정] 이 정관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①②항 개정)